

의안 번호	13
----------	----

2026. 7.

마산·진해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변경 동의안



마산·진해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변경 동의안

의안 번호	1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7. 9.

제 출 자 : 창 원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마산 및 진해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을 기존 ‘재단법인 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’에서 ‘사회복지법인 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회’로 변경하여 자활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마산·진해지역자활센터 현황

○ 기본현황

구 분	마산지역자활센터	진해지역자활센터	비 고
소재지	마산회원구 북성로 293-1	진해구 웅천동로 204	
설립일자	2000. 8. 1.	2001. 12. 31.	
조직현황	김은희 센터장 외 12명	김미숙 센터장 외 10명	
사업규모	13개 자활사업단 (107명)	12개 자활사업단 (88명)	
운영법인	재단법인 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		

○ 주요업무

-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대상 체계적인 자활지원계획 수립
- 맞춤형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, 사례관리 및 취·창업 지원 등 자립도모

나. 운영법인 변경 사유

- 기존 운영법인 조직 구조 개편에 따른 사업 및 고용의 연속성 유지
 - 본 변경은 외부 이관이 아닌 동일 교구 산하 조직 간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기존 운영법인의 변경 요청건으로 기존 종사자의 고용을 전원 승계하고 자활근로사업 및 자산, 시설 운영 방식 그대로 유지
- 자활사업 전문성 강화 및 책임성 확보
 - 천주교마산교구 산하에서 운영되던 사회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업 전담 법인 중심으로 통합·일원화함으로써 자활사업 기획·수행·평가의 전문성 제고

※ 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비교

구 분	재단법인	사회복지법인	비 고
근거법령	「민법」 제32조	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6조	
설립목적	특정 목적의 공익사업 수행	사회복지사업 수행	
주요사업	장학, 문화, 교육, 종교, 복지 등 다양한 공익사업	사회복지사업 중심	
법인성격	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비영리법인	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특수목적 비영리법인	

- 경남도 내 타 시·군 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변경 동시 추진
 - 진주, 함안, 고성, 하동 등 ‘재단법인 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’ 이 운영중인 4개 지역자활센터 또한 사회복지사업 전문법인인 ‘사회복지법인 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회’ 로 운영법인 변경 추진

※ 경남도 및 보건복지부 : 지자체 요청시 운영법인 변경 결정 가능

3. 향후계획

- 운영법인 변경 검토의견서 제출 (창원시 → 경상남도)
- 운영법인 변경 결정(경상남도) 및 지정서 재교부(보건복지부) ‘26. 12월 한

붙임 관련법령 및 지침 1부.

□ 국민기초생활보장법

제16조(지역자활센터 등)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,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(이하 이 조에서 “법인등”이라 한다)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·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
2.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, 상담,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
3.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
4.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·경영 지도
5.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·운영 지원
6.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

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지역자활센터의 설립·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
2. 국유·공유 재산의 무상임대
3.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

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

제12조(자활사업의 위탁시행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·민간기관·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(이하 “자활사업실시기관”이라 한다)에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

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수용능력 등에 관하여 미리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□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

제6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처음 민간 위탁 하려면 창원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시장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
2.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

붙임 2

관련지침 [2026년 자활사업 안내 p.165]

□ 지역자활센터의 주요 변경사항 발생시 조치사항

○ 신청 법인 등(비영리법인, 단체)의 변경시 조치사항

- 지역자활센터는 양도·양수할 수 없으므로 지정취소가 원칙
- 다만, 관할 시·군·구청장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촉진 목적 달성을 위해 당해 지역자활센터 운영의 연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운영주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법인을 지정하기 위한 공모단계부터 보건복지부에 사전 협의 후 추진
- 복지부 장관은 서류 및 지자체장의 의견서를 고려하여 변경 지정 여부 결정 단, 신청기관의 법인화, 운영법인 등의 명칭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·도지사가 변경사항 관련 서류 및 시·군·구청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(승인여부 결정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)하고, 시·군·구에 즉시 통보여부를 결정함.